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9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임오경 · 진성준 · 허성무
민형배 · 박수현 · 김교홍
윤준병 · 이개호 · 양문석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 신설).
- 나. 한국대학스포츠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 다. 한국대학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 라.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설립 등기일에 한국대학스포츠협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를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

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을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학스포츠 협회의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

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임직원은 대학스포츠협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u> <u>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u> <u>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u> <u>(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u> <u>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u> <u>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u> <u>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u> <u>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u> <u>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u> <u>한다.</u> <u>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u> <u>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u> <u>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u> <u>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u> <u>사업</u> <u>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u> <u>및 연구</u> <u>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u> <u>최 및 교류 사업</u> <u>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u> <u>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u> <u>로 한다.</u>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u>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u>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u>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u>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u>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u>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② (생략)	③ <u>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 ④ <u>대학스포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 -----<u>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회가</u>----- ----- -----<u>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회</u>----- -----. 제43조(감독) ① ----- -----<u>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회는</u>----- -----. ② (현행과 같음)
---	--